

# 공 보

**제627호 2018. 1. 17.(수)**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8-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3

거창군 고시 제2018-10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02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5

거창군 고시 제2018-11호 상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 11

거창군 고시 제2018-12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4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8-60호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거창군 공고 제2018-62호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경과등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32

거창군 공고 제2018-63호 자동차 건설기계 정기검사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 등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33

거창군 공고 제2018-81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 34

거창군 공고 제2018-86호 영농정착금 보조금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35

거창군 공고 제2018-88호 2018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자 모집공고 ..... 36

거창군 공고 제2018-94호 각골소하천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 38

거창군 공고 제2018-104호 2019년 시행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공고 ..... 41

거창군 공고 제2018-106호 거창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 47

의 관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 17.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1길 62 등 10건(부여 10, 변경1)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33	2009-07-02	2017-01-10	행정구역명(거창+함양군) 활용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80-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동로 190	2009-12-28	2017-01-10	1994년 거창읍시가지 간선도로명 결정에서 유래	
3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85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185-18	2009-12-28	2017-01-10	가북면 용암리를 지나 해인사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179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401-13	2009-12-28	2017-01-10	가북면 용암리를 지나 해인사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353-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1길 11	2009-12-28	2017-01-10	동례길의 시점으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10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말목고개길 222-302	2009-04-01	2017-01-10	북상면 농산리와 위천면 강천리 사이의 말목고개 지명이 반영된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630-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1길 184-7	2009-04-01	2017-01-10	행정구역명 석강을 이용하여 붙여진 첫번째 도로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0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78-103호(1978. 03. 20)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2-102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18. 1. 17.

## 거 창 군 수

### 1. 사업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 점	종 점		
교통 시설	당 초 가지리 교촌마을 (소로2-10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창	가지	소로	2	102	220	8.0	2,092	거창읍 가지리 299-1	거창읍 가지리 349-10	경고 1978-103호 (1978.03.20)	'16. 2. 23 ~ '18. 12. 31
	변 경 가지리 교촌마을 (소로2-10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창	가지	소로	2	102	220	8.0	1,998	거창읍 가지리 299-1	거창읍 가지리 349-10	경고 1978-103호 (1978.03.20)	'16. 2. 23 ~ '18. 12. 31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2018. 12. 31

###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지번)	지목	지적면 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계		당초		13,923	2,092					당초
계		변경 (분할 후)		13,923	1,998					변경
1	거창읍 가지리	299-1	도	49	11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299-1	도	49	11		거창군			
2	거창읍 가지리	300-1	도	56	44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00-1	도	56	44		거창군			
3	거창읍 가지리	301-2	대	205	65		이*례			
	거창읍 가지리	301-2 (301-4)	대	46	46		거창군			
4	거창읍 가지리	301-1	대	93	52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1-1	대	93	93		거창군			
5	거창읍 가지리	302	대	60	35		이*룡			
	거창읍 가지리	302	대	60	60		거창군			
6	거창읍 가지리	1719-9	도	3,130	597		국 (건설부)			
	거창읍 가지리	1719-9	도	3,130	597		국 (건설부)			
7	거창읍 가지리	303	대	228	58		정*수			
	거창읍 가지리	303 (303-1)	대	40	40		거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지번)	지목	지적면 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8	거창읍 가지리	292-3	대	288	97		경상남도 *재단			
	거창읍 가지리	292-3 (292-6)	대	105	105		거창군			
9	거창읍 가지리	304	대	373	14		김*길			
	거창읍 가지리	304	대	373	0		김*길			
10	거창읍 가지리	292-2	대	20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명*학원			
	거창읍 가지리	292-2	대	20	1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덕*학원			
11	거창읍 가지리	292-2	대	20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명*학원			
	거창읍 가지리	292-2 (292-5)	대	2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	덕*학원			
12	거창읍 가지리	304-1	도	34	34		김*길			
	거창읍 가지리	304-1	도	14	14		거창군			
13	거창읍 가지리	304-1 (304-3)	도	34	34		김*길			
	거창읍 가지리	304-1 (304-3)	도	20	20		거창군			
14	거창읍 가지리	292-1	대	40	2		경상남도 *재단			
	거창읍 가지리	292-1	대	38	38		거창군			
15	거창읍 가지리	292-1	대	40	2		경상남도 *재단			
	거창읍 가지리	292-1 (292-4)	대	2	2		거창군			
16	거창읍 가지리	305-1	대	215	89		이*학			
	거창읍 가지리	305-1 (305-5)	대	72	72		거창군			
17	거창읍 가지리	289-2	대	360	3		윤*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지번)	지목	지적면 적 (m <sup>2</sup> )	편입면 적 (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거창읍 가지리	289-2 (289-3)	대	6	6		거창군			
18	거창읍 가지리	305-2	대	94	5		박*			
	거창읍 가지리	305-2	대	94	0		박*			
19	거창읍 가지리	288-3	대	397	21		경상남도 *재단			
	거창읍 가지리	288-3 (288-6)	대	23	23		거창군			
20	거창읍 가지리	305-3	대	38	35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	박*			
	거창읍 가지리	305-3 (305-6)	대	25	25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	박*			
21	거창읍 가지리	288-4	대	53	36		경상남도 *재단			
	거창읍 가지리	288-4	대	53	53		거창군			
22	거창읍 가지리	287	대	192	2		최*자			
	거창읍 가지리	287	대	192	0		최*자			
23	거창읍 가지리	349-14	임	358	180		경상남도 *재단			
	거창읍 가지리	349-14 (349-20)	임	118	118		거창군			
24	거창읍 가지리	349-9	임	1,521	310		경상남도 *재단			
	거창읍 가지리	349-9 (349-18)	임	270	270		거창군			
25	거창읍 가지리	285	전	4,175	96		경상남도 *재단			
	거창읍 가지리	285 (285-1)	전	140	140		거창군			
26	거창읍 가지리	349-10	전	1,944	302		경상남도 *재단			
	거창읍 가지리	349-10 (349-19)	전	201	201		거창군			

○ 지 장 물

순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품명	구조및규격			주소	성명	
1	거창읍 가지리	292-3	가옥	기 와 , 12.3*5.7	70.11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양*암	
2	거창읍 가지리	“	담장	블록9.9*1 + 12.3*1.6	29.58	m <sup>2</sup>	“	“	
3	거창읍 가지리	“	담장	블록	1.8	m <sup>2</sup>	“	“	
4	거창읍 가지리	“	창고	블록스레트 3.3*2.8	9.24	m <sup>2</sup>	“	“	
5	거창읍 가지리	“	창고	블록스레트 2.8*2.5+ 1 .8*2	10.6	m <sup>2</sup>	“	“	
6	거창읍 가지리	“	수도	-	1.0	식	“	“	
7	거창읍 가지리	“	바닥	-	24.0	m <sup>2</sup>	“	“	
8	거창읍 가지리	“	대문	철재문주	1.0	식	“	“	
9	거창읍 가지리	“	계피나무	12년	4.0	주	“	“	
10	거창읍 가지리	“	모과나무	100년	1.0	주	“	“	
11	거창읍 가지리	“	감나무	30년	1.0	주	“	“	
12	거창읍 가지리	“	기타수목	15년	3.0	주	“	“	
13	거창읍 가지리	287	가옥 (부속사)	슬레이트 10.3*4.6	47.38	m <sup>2</sup>	거창읍 교촌길 *	최*자	
14	거창읍 가지리	“	가옥(창고)	슬레이트, 2.1*2.9+ 3 .7*4.4	22.37	m <sup>2</sup>	“	“	
15	거창읍 가지리	“	담장	블록, 4*1	4.0	m <sup>2</sup>	“	“	
16	거창읍 가지리	“	감나무	25년	1.0	주	“	“	
17	거창읍 가지리	“	물앵두	20년	1.0	주	“	“	
18	거창읍 가지리	“	대문	철재문주	1.0	식	“	“	
19	거창읍 가지리	“	담장	10*1	10.0	m <sup>2</sup>	“	“	
20	거창읍 가지리	“	바닥	-	12.0	m <sup>2</sup>	“	“	
21	거창읍 가지리	“	가추	목 재 , 1.5*10.3	15.45	m <sup>2</sup>	“	“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장물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품명	구조및규 격			주 소	성 명	
22	거창읍 가지리	“	동백나무	15년	1.0	주	“	“	
23	거창읍 가지리	“	감나무	10년	1.0	주	“	“	
24	거창읍 가지리	“	정화조	-	1.0	식	“	“	
25	거창읍 가지리	“	제피나무	30년	1.0	주	“	“	
26	거창읍 가지리	“	대추나무	25년	1.0	주	“	“	
27	거창읍 가지리	349-10	대나무	-	10.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53-1	거창*고	
28	거창읍 가지리	“	상수리나무	20년	2.0	주	“	“	
29	거창읍 가지리	“	은행나무	25년	8.0	주	“	“	
30	거창읍 가지리	“	기타수목		4.0	주	“	“	
31	거창읍 가지리	“	울타리	철망	70.0	m	“	“	

# 상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1월 17일

## 거 창 군 수

###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상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다. 위 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21번지일원

다. 사업기간: 2018년 1월 ~ 2018년 8월

라. 사업규모

- L형옹벽 설치(H=2.0~5.0m) L=147.0m

- 조경석쌓기(4목) A=364.0m<sup>2</sup>, 조경석쌓기(12목) A=433.0m<sup>2</sup>

###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거창군수(안전총괄과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일: 거창군 고시2013-68호(2013. 6. 18.)
4.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하는 토지와 그 소유자 명세: 붙임참조
5. 설계도서 배치 및 열람: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6.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타부서 및 타 기관 사업의 중복성과 연계성은 없음
7. 사업효과 분석
  - 거창읍 상림리 일원에 집중호우시 주거지와 인접한 붕괴위험지역의 정비를 통하여 군민의 생활에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
8.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 정비사업 완료 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붕괴 위험지역 지정 해제토록 하고,
  -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해빙기, 우기)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 예정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안전총괄과(055-940-3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명세서 1부. 끝.

<붙 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sup>2</sup> )	편입 면적 (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3,898	2,113					
1	거창읍 상림리	1-10	대	169	169		거창군			
2	"	1-20	대	122	122		거창군			
3	"	1-21	대	150	150		거창군			
4	"	1-23	대	80	80		거창군			
5	"	1-28	전	373	373		거창군			
6	"	1-35	전	452	452		거창군			
7	"	1-43	전	93	93		거창군			
8	"	380-2	대	18	18		거창군			
9	"	1-27	대	260	57		거창군			
10	"	1-37	대	6	6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43-*, *층	정*기			
11	"	1-34	대	69	69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43-*, *층	정*기			
12	"	1-38	도	7	7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43-*, *층	정*기			
13	"	1-24	대	80	18		거창군			
14	"	1-8	대	73	73		거창군			
15	"	1-7	대	107	107		거창군			
16	"	8-4 (8-12)	대	129	7	거창군 거창읍 죽전길 13-*	이*부			
17	"	8-7 (8-13)	대	86	1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26-*	송*준			
18	"	8-3 (8-11)	대	281	12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26-*	송*준			
19	"	6-4 (6-13)	대	169	8	거창군 거창읍 죽전길 25-1*	김*순			
20	"	6-2 (6-11)	대	298	21		거창군			
21	"	6-3 (6-12)	종교 용지	347	32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성동 173-8*	재단법인 국제도덕협회			
22	"	6-7 (6-14)	대	181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성동 173-8*	재단법인 국제도덕협회			
23	"	6-8	대	19	19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	박*욱			
24	"	6-1 (6-10)	대	134	3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	박*욱			
25	"	6-6	대	66	66		거창군			
26	"	4-3	대	129	129		거창군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71-383호(1971. 6. 28.)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2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18. 1. 17.

## 거 창 군 수

### 1. 사업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 점	종 점		
교통 시설	당 초 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선)	거창	대동	소로	2	21	190	8.0	1,548	거창읍 대동리 757-1	거창읍 대동리 57	건고 1971-383호 (1971. 6. 28.)	'17. 4. 13 ~ '18. 12. 31
	변 경 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선)	거창	대동	소로	2	21	190	8.0	1,618	거창읍 대동리 757-1	거창읍 대동리 57	건고 1971-383호 (1971. 6. 28.)	'17. 4. 13 ~ '18. 12. 31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2018. 12. 31

###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계				5,162	1,548					당초
계				5,162	1,618					변경
1	거창읍 대동리	757-1	도	628	66		거창군			
			도	628	66		거창군			
2	거창읍 대동리	765-4	도	154	19		거창군			
			도	154	19		거창군			
3	거창읍 대동리	757	대	185	1	거창군 거창읍 시장길*	최*옥			
			대	185	0	거창군 거창읍 시장길*	최*옥			
4	거창읍 대동리	964-64	도	62	39		국(건설부)			
			도	62	39		국(건설부)			
5	거창읍 대동리	749-3	대	129	93	거창군 거창 읍 강양5길*	이*호			
			대	129	129	거창군 거창 읍 강양5길*	*종중			
6	거창읍 대동리	756	대	139	58	거창군 거창 읍 대동리*	윤*임			
			대	139	53		거창군			
7	거창읍 대동리	749-12	답	214	6	거창군 거창 읍 대동리*	김*출			
			답	214	6		거창군			
8	거창읍 대동리	751-2	대	122	63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조*권 외 1인			
			대	122	63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조*권 외 1인			
9	거창읍 대동리	751-8	전	284	106	거창군 거창 읍 대동리*	조*옥			
			전	284	128		거창군			
10	거창읍 대동리	751-11	전	20	16	거창군 거창 읍 대동리*	감*규			
			전	20	20		거창군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11	거창읍 대동리	751-5	대	213	102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박*제 외 2인			
			대	213	107		거창군			
12	거창읍 대동리	751-10	전	140	140		거창군			
			전	140	140		거창군			
13	거창읍 대동리	751-22	전	15	1		거창군			
			전	15	1		거창군			
14	거창읍 대동리	751-23	전	2	1		거창군			
			전	2	1		거창군			
15	거창읍 대동리	759-8	대	175	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신암동)	정*화			
			대	175	0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신암동)	정*화			
16	거창읍 대동리	749-16	답	63	63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	신*재			
			답	63	63		거창군			
17	거창읍 대동리	751-20	도	171	8		거창군			
			도	171	8		거창군			
18	거창읍 대동리	749-15	도	242	10		거창군			
			도	242	10		거창군			
19	거창읍 대동리	749-6	답	177	167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	신*재			
			답	177	177		거창군			
20	거창읍 대동리	62-6	전	497	497	거창군 거창읍 정장2길*	김*옥			
			전	497	497		거창군			
21	거창읍 대동리	57	전	720	91	거창군 거창읍 상동6길*	신*휘			
			전	720	0	거창군 거창읍 상동6길*	신*휘			
22	거창읍 대동리	56-7	도	810	91		거창군			

○ 지 장 물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장물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품명	구조및규 격			주 소	성 명	
1	거창읍 대동리	765-4	주방	조립식(3.6* 4)	14.4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강양5길 *	권*만	
2	거창읍 대동리	“	담장	블록(6.7*1. 6)	10.72	m <sup>2</sup>	“	“	
3	거창읍 대동리	“	대문	판넬	1.0	식	“	“	
4	거창읍 대동리	“	장독대	-	4.5	m <sup>2</sup>	“	“	
5	거창읍 대동리	“	아궁이	-	1.0	식	“	“	
6	거창읍 대동리	“	수도전	-	1.0	식	“	“	
7	거창읍 대동리	751-2	창고	블록판넬(4 *2.4)	9.6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강양5길 *	김*순	
8	거창읍 대동리	“	바닥	con'c (3.8*2.1)	7.98	m <sup>2</sup>	“	“	
9	거창읍 대동리	“	창고	조립식(2.2* 2.5)	5.5	m <sup>2</sup>	“	“	
10	거창읍 대동리	“	가옥	벽돌판넬(1 0.5*5.6)-(5. 6*1.9)	48.16	m <sup>2</sup>	“	“	
11	거창읍 대동리	“	심야전기	11Kw	1.0	식	“	“	
12	거창읍 대동리	“	물건이전비	-	1.0	식	“	“	
13	거창읍 대동리	“	수도	-	1.0	식	“	“	
14	거창읍 대동리	“	치자나무	10년	1.0	주	“	“	
15	거창읍 대동리	“	매실나무	15년	1.0	주	“	“	
16	거창읍 대동리	“	제피나무	10년	1.0	주	“	“	
17	거창읍 대동리	“	가죽나무	5년	1.0	주	“	“	
18	거창읍 대동리	“	오가피	10년	2	군	“	“	
19	거창읍 대동리	“	연산홍	10년	1	주	“	“	
20	거창읍 대동리	“	기타수목	10년	2	주	“	“	
21	거창읍 대동리	“	골담초	7년	1	주	“	“	
22	거창읍	“	기타수목	5년	2	주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품명	구조및규격			주소	성명	
	대동리								
23	거창읍 대동리	“	화단		12	m <sup>2</sup>	“	“	
24	거창읍 대동리	751-2	가옥(공가)	스레이트(6.5*5)	32.5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강양5길 *	조*권	
25	거창읍 대동리		창고(화장실)	스레트	3.0	m <sup>2</sup>	“	“	
26	거창읍 대동리		수도	-	1.0	식	“	“	
27	거창읍 대동리		가추	스레트	4.0	m <sup>2</sup>	“	“	
28	거창읍 대동리		담장	-	12.0	m <sup>2</sup>	“	“	
29	거창읍 대동리	751-5	담장	블록(8.5*1.7)	14.45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	최*입	
30	거창읍 대동리		창고	스레이트(2.9*1.5)	4.35	m <sup>2</sup>	“	“	
31	거창읍 대동리		황금측백	15년	1.0	주	“	“	
32	거창읍 대동리	751-10	차고	조립식(6.5*3)	19.5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	이*인	
33	거창읍 대동리		담장	4*1.5	6.0	m <sup>2</sup>	“	“	
34	거창읍 대동리		감나무	30년	1.0	주	“	“	
35	거창읍 대동리		물앵두	15년	1.0	주	“	“	
36	거창읍 대동리		보리수	20년	1.0	주	“	“	
37	거창읍 대동리	751-20	차고	조립식(경량철골)(5*5)	25.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	이*인	
38	거창읍 대동리	749-8	가옥	양철	24.4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	정*화	
39	거창읍 대동리		가옥	벽돌기와강판(9.3*9)-(1.4*4.7)	77.12	m <sup>2</sup>			
40	거창읍 대동리		미용실	조립식강판(3*7.9)	23.7	m <sup>2</sup>			
41	거창읍 대동리		대문	철재파이프	1.0	식			
42	거창읍 대동리		담장	13*2	26.0	m <sup>2</sup>			
43	거창읍 대동리		마당	콘크리트	35.0	m <sup>2</sup>			
44	거창읍 대동리		수도	-	1.0	식			
45	거창읍		영업권	카라헤어샵	1.0	식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장물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품명	구조및규 격			주 소	성 명	
	대동리								
46	거창읍 대동리		시설 및 물품이전비	-	1.0	식			
47	거창읍 대동리		석류나무	30년	1.0	군			
48	거창읍 대동리		블루베리	3년	6.0	주			
49	거창읍 대동리		기타수목	5년	1.0	주			
50	거창읍 대동리		화단		4.0	m <sup>2</sup>			
51	거창읍 대동리	659-2	탱자울타리	12*H1.2	14.4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	김*식	
52	거창읍 대동리		능소화	15년	3.0	주			
53	거창읍 대동리		울타리	철망 30*H1.2	36.0	m <sup>2</sup>			
54	거창읍 대동리	664-10	창고 및 화장실	블럭슬레이 트	10.9	m <sup>2</sup>	거창군 남하면 양곡2길	제*석	

##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거창군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상위 법률에 맞춤

나. 조례로 위임된 위임 범위를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더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위임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제4호, 제10호)

○ 아이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

○ 군복무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 신용회복위원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나. 긴급복지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 추가(안 제2조제13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자 추가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대행 신설(안 제3조)

라. 그 밖에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문장 등을 수정함

#### 4. 입법예고기간 : 2018. 1. 11.~2018. 1. 31.(20일간)

####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복지정책과장,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 에게 서면이나 메일 (eunriv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055)940-314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서 1부.

2. 거창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자치법규명:

성명(단체명):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사전심사 의견서

□ 제명: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항 목	심 사 의 견
제 안 서	○ 수정안 참조
제 명	○ 수정 없음
본 칙	○ 수정안 참조
부 칙	○ 수정 없음
신 구조 문 대 비 표	○ 수정안 참조
개 정 근 거	○ 수정안 참조
그 밖 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예고: 입법예고 20일이상 재입법예고대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절차법」 제41조</li> <li>-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li> </ul> </li> <li>○ 규제사항: 해당없음</li> <li>○ 상위법위배: 해당없음</li> <li>○ 예산확보: 확보여부 기술바랍니다.</li> <li>○ 상급기관 협의: 해당없음</li> <li>○ 성별영향분석: 분석 및 반영여부 기술바랍니다.</li> </ul>

#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
----------	-------

제출연월일	2018. . .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 1. 제안이유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 맞추고, 조례로 위임된 위임 범위를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더 명확히 하는 등 이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위임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제4호, 제10호)

- 아이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
- 군복무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 신용회복위원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나. 긴급복지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 추가(안 제2조제13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자 추가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대행 신설(안 제3조)

라. 그 밖에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문장 등을 수정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위임행정규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5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2018. 1. 11. ~ 1. 30.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분석의뢰
- (6)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

##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정이거나 공급이 제한 조치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거창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u>규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u>“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p> <p>1. <u>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u></p> <p>2. 임신, 출산, <u>아이양육</u> 등으로 소득활동이 <u>미비</u>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p> <p>3. <u>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u></p> <p>4. <u>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u></p> <p>5. <u>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u></p> <p>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u>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u></p> <p>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p> <p>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u>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u>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p>	<p>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 -----<u>“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u>----- -----</p> <p>1. <u>가구원 중 입원</u>----- -----<u>등의 사유로</u> -----<u>미미</u>----- -----</p> <p>2. -----<u>아이(「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u> <u>양육</u>-----<u>미미</u>-----</p> <p>3. <u>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으로</u>----- -----</p> <p>4. <u>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u>----- -----<u> 옮겨 다니며</u>-----</p> <p>&lt;삭 제&gt;</p> <p>5. ----- -----<u>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u>----- -----</p> <p>6. ----- ----- -----</p> <p>7. ----- -----<u>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u>-----</p>



## 관련법령

###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16.12.2.] [법률 제14319호, 2016.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문개정 2009.5.28.]

###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6.6.30.]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2016.5.25., 타법개정]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5.6.2.]

###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임행정규칙

[시행 2017.11.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5호, 2017.11.3, 일부개정]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2.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3.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 다. 주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4.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 2호 및 동시행령 제3조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 라. 주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16.9.3.] [법률 제14064호, 2016.3.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 2017.12.20.] [법률 제14887호, 2017.9.1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11.(생략)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0.31.] [법률 제15020호, 2017.10.31., 일부개정]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1절 통칙

제56조(설립)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3호, 2017.3.14., 일부개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제7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사전안내, 검사 유효기간경과 안내, 검사명령서, 운행정지명령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정기검사 최고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공고제목: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 경과안내, 검사명령서, 운행정지명령서 등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18. 1. 15. ~ 2018. 1. 30
- 공고대상: 붙임
- 문 의 처: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민원담당 (☎055-940-3293)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기간이 계속 지연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가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0일

# 거 창 군 수

- 붙임 1. 자동차건설기계정기검사사전안내문경과등우편물반송분공시송달공고명단 1부.  
 2. 자동차정기검사경과엽서운행정지명령등반송분공시송달명단 1부. 끝.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1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부과, 독촉 고지서, 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등
- 공고기간: 2018. 1. 15. ~ 2018. 1. 30.
- 공고대상: 붙임
- 문 의 처: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민원담당(☎055-940-3293)

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술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 검사기간 위반자 중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행정처분 전 자진 납부 시 부과금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후 납부 지연 시 가산금 5%, 증가산금 매월 1.2%인 최고 77%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납부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조치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 거 창 군 수

- 붙임 1. 건설기계 정기검사과태료 사전처분등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1부.  
2. 자동차건설기계정기검사경과과태료압류안내서반송분공시송달명단 1부. 끝.

##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솔향기돌담 농어촌 체험 · 휴양마을에 대해 사업자 변경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 월 12일

# 거창군수

직인

1. 지정 연월일 : 2018. 01. 11. (최초 지정일 : 2011. 03. 18.)

2.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명칭 · 위치 및 규모

- 명 칭 : 솔향기돌담마을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1길 157
- 규 모
  - 체험시설 연면적 143.57m<sup>2</sup>(체험, 숙박, 화장실 등 편의시설)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구분	대 표 자	주 소
당초	이응승	경남 거창군 웅양면 동호2길 **
변경	이명화	경남 거창군 웅양면 동호3길 **-9

4. 사업개요

- 농촌문화체험 · 휴양마을 운영을 통한 도 · 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소득 증대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5. 붙 임

- 농어촌 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조건 1부.

# 공시송달 공고

거창군 영농정착금 보조금 환수금액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기간 : 2018. 1. 15. ~ 2018. 1. 29.(15일간)
- 2. 공고사항(반송내역)

성명	주소	반송사유	체납내역	
			부과연도	환수금액(원)
박상배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길 ***-***	폐문부재	2017	3,660,270
신인화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	주소불명	2017	838,360
이창선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 ***동 ***호(**아파트)	수취인불명	2017	2,360,350
이재희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내학길 ***-**	수취인불명	2017	4,175,340

- 3. 공고내용 : 보조금 환수금액 사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4. 납부방법 : 우리 군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 농.축.수협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에 따른 별도의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5.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55-940-8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15.

## 거창군수

## 공 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에 따라 2018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5일

## 거 창 군 수

### 1. 목 적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 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 농민들의 고충해소 및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

### 2.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조류퇴치기

### 3. 신청기간 : 2018. 1. 15 . ~ 2. 14. (30일)

### 4. 신청대상

- 관내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자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다만, 행정기관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 5. 지원금액

-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총 설치비의 60% 이하
- 2018년 사업예산: 금271,840,000원(자부담 제외)

### 6. 지원 우선순위

- 매년 피해가 많고 권역별로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 피해반복 지역, 전년도 선정대상에서 탈락한 지역, 예방시설설치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기타 농작물 피해 지역 등

### 7. 신청 접수기관 : 피해 발생지역 해당 읍·면사무소

### 8. 안내 및 문의처

- 거창군청 환경과(☎940-3763)
- 읍사무소 환경담당, 면사무소 총무담당 또는 개발담당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
	종류		
	설치기간		
	. . . . . ~ . . . . . (    일간)		
	설치비용	지원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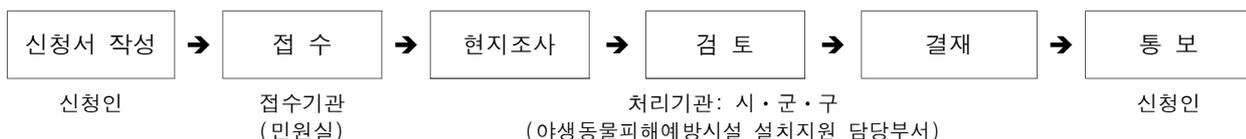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서류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 『각골소하천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각골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1월 17일

거            창            군            수

###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각골소하천 정비공사
- 나. 위      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일원
- 다. 사업내용 : 하천정비 L=1.3km
- 라. 사업기간 : 2018. 01 ~ 2018. 12(12개월)
- 마.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과장)

### 2. 보상내용

- 가. 토      지 :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336-4번지 외 32필지
  -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 3.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 01. 17. ~ 2018. 02. 01.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하천담당(☎ 055-940-3642)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보상시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로 갈음하며, 이해관계인은 권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 권리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 6.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과 지번은 추후  
지적 분할 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하천담당(☎ 055-940-3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73호(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에 따라 2019년 시행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9년도 정부지원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7일

거창군수

- 신청기간: 2018. 1. 17. ~ 2018. 2. 23일까지
- 신청대상자: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
- 신청서 제출기관: 농업기술센터(총괄), 사업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등
- 지원조건·자격·방법 등: 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및 제출기관 문의
- ※ 사업시행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에서도 확인 가능
-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농업인 등 신청 ⇒ 신청서 검토(시·군) ⇒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 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농림축산식품부 심의 ⇒ 기획재정부 심의 ⇒ 국회 확정
- 안내기관: 농업기술센터, 거창군청(사업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지역농협, 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거창사무소
- ※ 기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총괄부서), 읍·면사무소, 또는 안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축산과) ☎ 940-8123】

## □ 대상사업: 125개 농림축산식품사업

### 【농촌분야(19)】

#### I.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12)

1.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 개최
2. 귀농귀촌교육 지원
3. 귀농귀촌실태조사
4.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5. 관광농원
6. 농어촌민박
7. 농촌다원적자원활용(지자체)
8. 세계중요농업유산보전관리(지자체)
9.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10. 농촌재능나눔 활성화지원(민간)
11. 농촌형교통모델
12.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

#### II. 농촌복지증진(7)

13.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
14.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15.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방문콘서트)
16.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17.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18.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19. 취약농가인력지원

### 【농업분야(19)】

#### I. 경쟁력제고(2)

20.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21. 농촌고용인력지원

#### II. 생산기반확충(6)

22.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지원
23.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24.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25. 유기질비료 지원
26. 친환경농업기반구축
27. 토양개량제 지원

### Ⅲ. 농가경영안정(6)

- 28. 경영이양직불금
- 29. 농기계임대사업
- 30. 밭농업직불금
- 31.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 32. 조건불리직불금
- 33. 친환경농업직불

### Ⅳ. 국제협력협상(1)

- 34.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음자)

### Ⅴ. 기술개발(4)

- 35.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36. 신기술시범사업
- 37. 농업현안해결 기술지원
- 38.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지원사업

## 【식량분야(6)】

### I. 경쟁력제고(4)

- 39.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40.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 41.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 42. 쌀가공산업육성지원

### II. 생산기반확충(2)

- 43. 논타작물재배지원(생산조정제)
- 44.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 【축산분야(12)】

### I. 생산기반확충(6)

- 4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46.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 47. 산지생태축산농장지원사업
- 48.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49.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 50.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

### II. 경쟁력제고(1)

- 51.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 Ⅲ. 축산물안전관리(1)

- 52. 축산물이력관리지원

### Ⅳ.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3)

- 53.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 54.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
- 55. 한국형메쓰거라이 경영컨설팅

### Ⅴ. 축산농가경영안정(1)

- 56. 친환경축산직불

## 【식품분야(13)】

### I.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9)

- 57. GAP위생시설 보완 지원
- 58.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 59. 식품기능성원료 등록지원
- 60. 식품기능성평가 지원
- 61. 기능성 원료등록 지원
- 62.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자치단체)
- 63.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 64.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65.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 Ⅱ. 생산기반확충(4)

- 66. 전통주산업진흥
- 67.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생활, 제주)
- 68. 찾아가는 양조장
- 69. 향토산업육성사업

## 【유통원예분야 (40)】

### I. 생산기반확충(21)

- 70.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71. 화훼유통개선지원(용자)
- 72. 공영도매시장현대화비용지원
- 73. 과수ICT분야 시설보조
- 74.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 75.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 76. 과수생산유통지원(용자)

77. 과수우량묘목생산 기반조성
78.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
79. 기존 APC 선별, 포장시설 지원
80. 꽃가루생산단지조성
81.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시설지원
82. 산지유통시설지원(APC)(자치단체)
83.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84.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85.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자치단체)
86. 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수송차량)(자치단체)
87. 저온유통체계구축(화훼류습식유통)
88.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민간경상)
89.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자치단체자본)
90. 특용작물(인삼)시설현대화지원

## II.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16)

91. 공동선별비(자치단체)
92. 농산물 신유통경로확산 지원
93.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94.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교육 및 홍보 지원
95. 농산물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지원
96. 농산물마케팅지원(자치단체)
97. 도매유통활성화지원(용자)
98. 공판장(청과) 출하촉진(용자)
99. 화훼유통개선지원(용자)
100. 농산물수매지원(용자)
101.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102. 산지유통종합자금(용자)
103. 인삼특용작물계열화(용자)
104. 자조금지원(단체)
105.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106. 채소류생산안정지원

## III. 경쟁력제고(3)

107. 과실브랜드육성지원
108.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자치단체)
109. 원예분야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지원

## 【산림분야(16)】

### I. 생산기반확충(9)

- 110. 조림
- 111. 정책숲가꾸기
- 112. 공공산림가꾸기
- 113. 양묘시설현대화
- 114.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 115.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116.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 117. 목재산업단지 조성
- 118. 수출기반구축

### II. 임가지원 및 유통활성화(3)

- 119.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 120. 청정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 121.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 III. 경쟁력제고(4)

- 122.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
- 123. 임산물 상품화 지원
- 124. 산림조합특화사업
- 125. 백두대간 주민지원

## 거창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11-44호(2011.07.08.)로 최초 결정된 거창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화물자동차고지)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8. 01. 18.

###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51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류	명칭	위 치	사업규모(m <sup>2</sup> )				사업기간	최 초 결정일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유통 업무 설비	거창군 화물자동차공영차 고지 조성사업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519번지	22,263.9	18,363.9	136.73	134.82	2014.05.12 ~2017.12.31	거창군 고시 제2011-44호 (2011.07.08.)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
4.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군계획시설 사업의 완료보고서에 대한 준공검사 필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신청인	성명	거창군수			법인등록번호	3848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b>준 공 내 용</b>										
사업명칭	거창군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경상남도 권역별 지역물류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경남도의 서북부권역 물류단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 조성을 통한 시가지 주차난 해소</li> </ul>									
사업위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519번지 일원				사업면적	18,363.9㎡				
시행방법	거창군 시행				시행기간	2014.05.12 ~ 2017.12.31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계	차	답	과	잡	구			
	면적	18,363.9	18,363.9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계		주차장			비고			
	면적	18,363.9		18,363.9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상수도	하수도	건축공						
	개요	L=55m	L=329m	사무실 1동 - 건축면적:136.73㎡ - 연면적:134.82㎡						
소요사업비	4,409백만원			공사완료일		2016. 11. 28.				

2018년 01월 18일  
**거창군수**